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이하 “AED”라 한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설치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ED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AED의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증가에 따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AED활용이 늘어나면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시설에 장비 안내도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AED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AED의 적시 사용과 안전한 사용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